

서울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2나20128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동명, 조흥찬

피고, 피항소인 E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영

변 론 종 결 2022. 10. 7.

판 결 선 고 2022. 11. 4.

제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가합37072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 F, G 사이에 2015. 7. 14. 체결된 399,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9. 13. 체결된 312,142,000원의 증여계약, 2017. 11. 21. 체결된 143,018,61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84,720,603원, 원고 B, C, D에게 각 189,813,5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 F, G 사이에 2016. 7. 21. 체결된 4,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7. 28. 체결된 22,502,400원의 증여계약, 2016. 9. 13. 체결된 146,175,310원의 증여계약, 2017. 11. 3. 체결된 45,694,273원의 증여계약, 2017. 11. 21. 체결된 97,324,337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5,232,106원, 원고 B, C, D에게 각 70,154,7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의 “있다고 할 것인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시점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돈의 증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피고의 소유권 취득일이나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일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와 F, G 사이의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 다음에 행을 바꾸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F와 G이 2013. 8.경 필리핀 내에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 그 무렵 이미 피고에게 그 처분대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돈의 증여를 사해행위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F, G 사이의 증여계약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3. 8.경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부터 제7쪽 제11행까지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4항의 “본안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의 충족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어떠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전제로서 채무자의 해당 법률행위가 일어난 시점 역시 구체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와 F, G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시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2013. 8.경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사해행위로서 증여계약의 체결 시점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인 원고들이 위 증여계약의 체결 시점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과 같은 금전 증여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금전의 수수만을 수반할 뿐이다. 피고가 F, G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채무자인 F, G의 증여계약 체결과는 별개의 독립한 피고의 법률행위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 또는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일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객관적 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시점에 해당 부동산 가액 상당액 또는 각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시점에 피고와 F, G 사이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구, 판사 정문경, 판사 이준현